

노인인권 보장에 관한 문헌분석의 비교 문화적 고찰

김 재 곤

광주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요약) 노인 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전제로 할 필요성이 크다. 어떠한 노인 관련 문제이든지 그 해결을 위한 논의의 총체적인 접근방법으로 인권 담론에 의한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관점에서의 접근은 노인문제가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노인 개인보다는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인권 정책이나 법안을 제정하기 위하여 그 기초자료로 국제적인 각종 선언문 및 주요국의 노인인권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하여 그 시사점을 얻을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는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노인인권에 관련된 국제적인 동향을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였다.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한 입법사례 및 인권 관련 제도의 운용 경험을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것은 노인인권 법령 및 제도가 나아갈 방향을 위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 도출에 큰 의미를 지닌 일이라고 사료된다.

[Key words: 노인인권, 노인복지, 인권]

이 논문은 저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며, 이 논문에 관한 일체의 서신왕래는 (우) 530-420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26-14 김재곤 박사 앞으로 하시길 바라며, 저자의 e-mail 주소는 phaloskjg@hanmail.net이다.

서론

우리 문화권에서는 근래 노인들의 인간적인 존엄성 유지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부를 비롯한 공적 부문과 시민사회 등 사적 부문에서 다양한 노력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고령화의 빠른 진전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서비스 마련에 나서고 있다. 노인복지법(1981),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991),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7), 치매관리법(2012), 기초연금법(2014)등의 제정 및 개정이 그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과 제도, 서비스 체계는 그것이 지니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노인복지 정책의 수립 및 제도화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사회를 대비한 각종 노인 정책과 이에 대한 논의가 서로 유기적 관계 및 일관성을 지니고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노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된 방안이 구체적 제도나 정책 실현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논의 그 자체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인 정책에 대한 논의 결과가 실제 관련 법제의 정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그나마 제정된 노인 정책 관련 법령의 내용도 체계 및 통일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노인관련 법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개별적 용어의 정의에서부터 구체적 실현 과정의 방법과 내용 등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다는 인상을 받기가 쉽다. 이러한 문제 역시 노인관련 법규의 제·개정 작업이 노인의 복합적 문제를 그때그때 해결하기 위해 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홍일선, 2008). 결국 노인관련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궁리는 체계적·종합적인 시각을 전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의 통일적인 접근 틀로서 인권 담론의 접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권관점에서 노인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은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마련을 욕구사정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노인인권 보장

노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제공한다고 보는 시각을 중심에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인은 사회적 여건이나 조건에 관계없이 노인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에 기초하여 문제 해결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인권관점에서의 접근은 노인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받지 못할 경우 노인문제가 파생된다고 보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노인 개인보다는 노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 시스템에 있다고 보는 것이다. 즉, 노인문제에 대한 인권관점은 노인의 결함을 찾아 변화시켜 주려는 것보다는 노인의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는 기본적인 인권 실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양철호·김경호·오세근, 2010).

그러나 현재 인권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는 노인 관련 연구는 그 양과 질에서 아직 미약한 수준이다. 노인 인권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인권 원론적 내용이거나, UN의 인권활동과 연계하여 이루어지거나, 노인 인권 침해의 상징적 형태인 노인 학대와 차별에 관한 연구 및 시설노인에 대한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인권 관점에서 노인 관련 제도, 정책, 서비스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제정하려는 노력은 여성, 장애인,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 인권을 옹호하고, 그것을 제도나 정책, 서비스로 보장할 수 있는 상호 점점 모색을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국제연합(UN)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에서 제시한 각종 선언문과 주요국에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노인인권 관련 제도 및 노인복지 법령 등을 비교법적인 분석을 통하여 입법사례 및 인권 관련 제도의 운용 경험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노인인권 법령의 제정 방향과 노인인권의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론적 배경

사회복지와 인권

인권, 즉 인간의 권리는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리는 생래적·천부적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인권을 구현하기 위

한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회복지란 인간 존중과 행복추구라는 가치를 기반으로 빈곤이나 차별, 고독과 소외, 질병, 학대와 폭력 등의 다양한 인권유린 문제에 개입하여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인권과 사회복지가 기반을 두고 있는 가치와 추구하는 목표는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사회복지란 인도주의와 민주적 이상에서 태어난 것으로 사회복지 실천은 그 시작에서부터 인간의 욕구충족과 잠재력 개발 및 자원의 개발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모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집단과 지역사회에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및 정신적 문제를 문화적 민감성을 갖고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실천의 가치, 윤리, 이론 및 서비스 과정 전체에 걸쳐서 인권을 고려해야 하며, 인간의 욕구에 반응하는 인권은 반드시 옹호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인권에 민감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질 때 사회복지 실천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인권보장은 사회복지 실천 과정을 통해 더욱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사회복지 실천은 인권에 민감할수록 더욱 전문적인 수준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므로, 인권과 사회복지 실천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이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발간위원회, 2004; 오병선 등, 2001).

노인복지와 노인인권

인권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용어이지만, 여전히 무거운 주제로 인식된다. 인권의 핵심 가치인 자유와 평등 또한 마찬가지이다. 자유와 평등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언급되는 용어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지 않으며, 그것을 토론하고 사유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 인권은 인권침해를 겪고 나서야 그 문제에 천착하게 된다. 인권에 대한 친숙함은 우리가 그러한 용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익숙함에 해당될 뿐, 오히려 그 본질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다. 노인인권도 마찬가지이다.

노인인권 보장

노인 관련 서비스나 정책에 관여하는 사람들은 노인인권을 자주 언급하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노인인권이 무엇인지, 노인과 그들 자신에게 있어 노인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 답을 분명하게 하지 못한다.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너무나 보편적인 것으로 당연하게 생각해 온 인권의 개념이 얼마나 모호하고, 또 심지어는 인권이라 말해지는 개념들이 정치적 수사나 이데올로기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기도 한다. 인권개념의 모호성은 그것이 이데올로기적 역사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형의 개념이기 때문이다(이재호, 2006).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의미한다. 즉 노인 인권은 노인의 인간존엄성 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국가는 이러한 노인인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관련 법적, 정책적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이행할 여러 가지 제도를 확충하여야 한다. 노인 인권은 노인복지가 도달해야 할 궁극의 목적이자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고 할 수 있다(안진, 2007). 그러한 이유로 노인인권은 각종 노인복지 제도와 정책을 입안할 때부터 지도이념으로 기능하여야 하고, 인권 친화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 검증까지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문화권이 경험해 보지 못한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노인인구가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고령자들이 ‘인간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에 대해 궁리는 매우 인색한 편이다. 따라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서 노인 인권문제를 연구한다는 것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매우 시의적절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사회복지는 가치지향의 학문이며, 사회복지 실천은 가치지향에 관한 전문적인 활동으로 그 가치의 핵심은 바로 ‘인간 존엄성’이다(박구용, 2012). 인간은 어떤 경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인간이며,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런 이유가 필요 없는 존엄 그 자체이다.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란 명제는 어느 장소, 어떤 때, 그리고 사회적 신분 등의 차이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무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노인인권에 관하여 국제기구 등에서 발표된 각종 선언문과 주요 5개국(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인권관련 제도 및 법령 등을 문헌고찰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현재 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노인인권에 관한 단행법은 물론이고 노인인권관련 법률도 제정된 것은 없기 때문에 노인복지관련 법령 및 일반적인 인권법령도 분석하여 노인인권 정책을 수립할 때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아울러 분석하였다. 자료는 법무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에서 발간된 자료를 참조하여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국내의 노인인권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분석하여 보았으나 대부분 기존에 발표된 국제적인 선언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분석된 자료는 노인인권 목록을 작성 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본고에서 분석했던 국제적인 주요 문헌은 <표 1>에 제시했다.

인권보장의 기본 요건을 제시한 국제적 문헌 분석

노인인권 보호에 관한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80년대이지만, 국제연합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 ‘노인의 권리 선언’을 했다. 이 선언에서는 사회권이 중심이 된 신체적·정신적 건강과 안전·안심에 대한 권리,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이미 1980년대에 들어와서는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고령화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행동계획을 마련하기 시작하면서 국제연합의 노인 인권보호에 관한 활동이 전개되었다. 국제연합은 1982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국제행동계획(Vienna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VIPAA)”을 채택하였다. 이 계획은 고령화, 노인문제 관련 정책과 사업의 수립 지침을 제시한 최초의 국제적인 기준이며, 건강과 영양 등 7개 하위 분야에서 실시되어야 할 정책방향 62가지를 권고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0).

노인인권 보장

<표 1> 분석대상 항목

년도	제 목	주 요 내 용
1948	세계인권선언	전문, 인권의 일반원칙, 시민.정치적 권리,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인권 이행 관련 사항 등 5개 영역으로 구성
1948	UN 노인의 권리선언	공공부조, 주거, 존경받을 권리 등 10가지 권리 제시
1982	고령화에 관한 비엔나 국제행동계획(비엔나 행동계획)	고령화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채택, 노인인권의 정책·사업의 실천적 지침 제공(62항 권고), NGO의 자발적 활동 장려
1991	노인을 위한 UN원칙(유엔총회 결의 46/91)	국제행동계획 중 인도적 측면 강조, 5개 원칙(자립, 참여, 보호, 자아실현, 존엄), 18개 권리 명시
1998	고용, 노인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각국 동향의 비교분석	퇴직 후 대비정책, 보건정책, 총괄 등의 분야에서 세부항목 상세 규정
2002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마드리드 계획)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

또 1990년에는 10월 1일을 세계 노인의 날(International Day for the Elderly)로 정하였으며, 1991년에는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을 채택하였다. 이 원칙에서는 자립(Independence) 등 5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모선희 등, 2004). 또한 2002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제2차 고령화 세계대회(2002. 04. 08. - 04. 12.)에서는 VIPAA를 일부 수정하여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 계획(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MIPAA)”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132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인 개인, 민간단체, 정부, 학계 및 산업계, 국제기구 등이 고령화 현상에 대응하여 건강과 영양, 소비자 보호, 주택과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분야 등에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98개의 권고

조향과 노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인과 발전, 노년까지의 건강과 안녕 증진, 능력을 부여하고 지원하는 환경확보’를 위하여 117개의 행동계획을 이행에 옮길 것을 권고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 발간위원회, 2004).

OECD는 고용, 노인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에 관한 각국 동향의 비교분석을 근거로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하였으며, 1998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7대 원칙’을 제시하였다(이석준, 2001; 이해경, 2009). 국제기구들이 제시해온 이와 같은 인권 및 노인관련 행동계획들은 국내의 노인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핵심적인 정책영역들을 설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노인인권 관련 법령 및 노인복지법령의 비교법적 분석

여기에서는 주요 5개국의 노인인권 관련 법률 및 제도와 노인복지 관련 법률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분석·정리하였다.

미국

미국에는 노인인권에 관한 법률이 없는 실정이지만, 차별금지 법제는 어느 정도 완비되어 있다. 차별금지 법제에 관한 주요한 법률을 살펴보면, 1963년도의 평등임금법을 비롯하여 1964년도 민권법, 1967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1975년 연령에 의한 차별금지법, 1990년 장애인법, 1991년도 개정 민권법, 2008년 유전자 정보¹⁾ 차별금지법 등이 있다. 미국에서 노인의 인권에 대한 논의는 국가의 인권정책이라는 차원보다는 노인복지 정책의 맥락에서 접근되고 있지만, 노인복지법의 기본목표는 노인의 존엄성과 자립이라는 인권의 기본가치를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은퇴자협회와 같은 노인권익옹호단체에

1) 유전정보에는 개인의 유전자 검사, 그의 가족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본인의 질병 및 가족의 상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다. 예컨대, 근로자의 부모가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유전적 요인이 있는 병을 앓았다는 이유로 그 근로자를 알츠하이머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고용에 차별을 가하는 행위 등이다.

노인인권 보장

서는 인구고령화가 생산적인 자원을 고갈시키고, 경제를 약화시키며, 사회에 큰 부담을 가져오리라는 관점이 널리 퍼져 있지만 노후에 관한 인식을 변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의 자원으로서 고령시민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고, 생산적인 역할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해왔다(김지훈, 2011; 법무부, 2008).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과 비슷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1965년에 제정된 노인복지법(The Older Americans Act)이 존재한다. 미국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사회복지 서비스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전국적인 서비스체계 구축의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965년 제정된 이래 지금까지 14차례에 걸쳐서 개정된 이 법은 모든 사회구성원이 노후생활에 있어서 ‘인간의 존엄성’과 ‘의미 있는 삶을 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은 미국 노인들이 자립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지하기 위한 정부와 민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발간위원회, 2004).

미국의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 소속 노인청(AoA: Administration on Aging)을 중심으로 각 주의 지역 노인복지사무소(Area Agency on Aging) 및 각종 서비스 기관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으며, 미국 노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협력해왔다. 노인청 내에 미국원주민을 위한 사무국과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국이 있고, 장기요양보호 옴부즈맨 국의 경우 노인청장에 위해 임명된 국장(Director)이 운영의 책임을 지며, 장기요양보호를 받고 있는 노인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Ombudsman Programs)의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한다(모선희 등, 2004).

미국에서는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시민운동을 통해 1965년 노인복지법과 1967년 고용에서의 노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1974년에는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노화연구원이 개원되었고, 이 무렵 노인들의 의견이 정치에 적극 반영되도록 대규모 여론을 형성하여 국회에 압력을 행사하는 노인 단체 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노인권익을 대변하고 옹호하는 비영리 법인체가 설립되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에는 미국 노인연합회와 미국 은퇴자협회가 설립되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법

국민적 노인권의 운동들은 ‘은빛운동’이라 일컬어졌다. 1990년 이후는 노인권의단체에 50대 후반 사람들도 다수 가입함으로써 그 규모는 미국 전체 인구의 10%를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모선희 등, 2004).

미국정부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노인청(AoA)을 중심으로 미국 노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개선해 왔으며, 고령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해 나가고 있다. 특히 노인의 권리라고 하는 부문은 노인에 대한 학대, 유기 및 착취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들이 발달하였다. 미국의 노인인권은 정부기관은 물론 많은 시민단체와 비영리 조직들이 활발히 참여한 가운데 꾸준히 신장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위기를 경험하고 있으며, 다양한 인권보장 정책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고 있기도 하다. 미국에서 발달한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과 프로그램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대책들을 검토하는데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일본

일본은 2007년도에 65세 이상 인구가 이미 총인구의 21%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가 되었고, 동시에 전후에 출생한 베이비 붐 세대가 고령기를 맞이하는 등 아주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大道英隆, 2012). 또한 급속한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총인구 감소도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 본격적인 고령사회의 도래를 앞두고 일본은 연금, 개호, 의료, 세제 등을 포함한 경제사회 시스템의 근본적인 재검토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97년도 이후 ‘사회복지기초구조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권리옹호 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한 정책과제로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복지영역의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와의 관계는 대등하지 못한 관계에 있기 때문인데,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데에 있어 대등한 관계가 되도록 지원할 필요가 제기되고(소송법상 武器對等の原則을 말함), 특히 사회복지 서비스의 이용자 중에서도 판단 능력이 불충분하거나 불충분해지는 과정에 있는 이용자²⁾의 권리를 옹호하기 위한

노인인권 보장

구체적인 시책마련이 정책과제로 대두되면서 권리옹호 시스템이 제도화된 것이다.

일본의 권리옹호시스템은 노인이 처한 상황이나 지원형태에 따라, ① 고충해결 시스템³⁾, ② 일상생활지원 시스템⁴⁾, ③ 인권옹호 시스템⁵⁾으로 구분할 수 있다(이서영, 2009). 또 일본의 권리옹호 시스템은 2000년 이후 서서히 다양한 형태로 정비되고 있었으나, 이렇게 제도화된 다양한 권리옹호 시스템이 이용자의 권리옹호를 위해 각각의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내실 있는 권리옹호 시스템을 위해서는 국가의 행·재정적 지원, 변호사회 등 법률단체의 협조,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복지기관의 자발적인 협조 및 기관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하였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고령자학대방지법”은 고령자에 대한 학대가 심각한 상황에 있어, 고령자의 존엄의 보존 유지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장세철·김경민, 2010). “인권옹호법안(人權擁護法案)”은 ‘인권침해 현상과 그 밖의 인권옹호에 관한 국내외의 정세에 비추어, 인권침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피해의 적정하고 신속한 구제 또는 그 실효적인 예방 및 인권존중의 이념을 보급하기’ 위하여 독립 행정위원회인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옹호를 위한 조직 체계를 정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본 최초의 포괄적인 인권 관련 법률안이라 할 수 있다(이준서, 2009). 일본 고령사회의 입법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은 ‘고령화사회대책기본법’(1995. 12. 6 제정)에서 정하고 있으며, 고령자 복지제도에 대해서는 ‘노인복지법’(1963. 7. 10. 제정)이 보완하

2)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등을 말한다.

3) 고충해결시스템은 보험급여, 요보호 인정, 보험료 부과정수 등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것,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고충이나 서비스의 질 확보와 관련된 것이 대상이 되며, 관련된 제도나 기관으로는 도·도부현의 개호보험 심사회, 국민건강보험단체인합회, 각종 읍무즈멘제도, 사회복지법령에 근거한 고충해결기관인 운영 적정화 위원회 등이 해당된다.

4) 일상생활지원시스템은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이용지원, 고충해결 제도의 이용지원, 재산보장·관리서비스의 제공, 거주공간의 확보, 행정절차대행 등에 관련된 것이 대상이 되며, 관련된 제도나 기관으로는 재산보전 등의 권리옹호서비스, 권리옹호상담사업, 성년후견제도에서의 후견인, 지역복지권리옹호사업에서의 전문원에 의한 지원 등이 해당된다.

5) 인권옹호시스템은 가정 내 폭력·학대, 재산권에 대한 침해 등과 관련된 활동으로 관련 제도나 기관으로는 고령자학대방지센터, 생명의 전화, 긴급상담센터, 인권옴부즈맨 등이 해당된다.

고 있다. 노인의 건강과 관련된 법률은 노인보건법(1982년 제정)에 따라 적용되어 오다가, 1997년에 제정되고 2000년부터 시행된 개호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일본은 노인 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별도의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노인 학대 예방과 대처에 관한 관련 법안으로 “고령자 학대 방지·개호자 지원 법안”이 현재 일본 의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김지훈, 2012).

현재 일본의 노인복지정책과 입법현황을 살펴보면, 고령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건강하고 인간답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호보험제도와 연금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일본이 이러한 입법정책을 취하는 것은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인해 충분한 재원을 미처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되면서 기존의 사회보장시스템을 유지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고용을 통해 연금을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정년제를 연장하거나,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는 입법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노화나 질병으로 인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하게 된 고령자에 대해서는 개호를 하거나 연금을 지급하여 고령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고령자의 취업, 연금, 개호제도 이외에도 고령자 주거환경이나 이동권의 확보 등을 통해 자립과 사회참가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자립적인 고령자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요개호자 내지는 요지원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생활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1세기 들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의료(고령자의 의료비), 연금,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급여비용이 급격하게 팽창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자는 국가재정의 경직화를 초래하고,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거품경제의 붕괴로 경제발전의 회복까지는 아직 요원한 상태라는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日本内閣部, 2014). 이러한 점을 토대로 장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 세대 간의 급여와 부담의 공평을 도모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는 인권을 수호하는 임무를 지닌 여러 분야의 독립 행정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제도 운영과정에서 재정비용과 관할권의 혼란을 야기하는 제도적 분산의 문제가 있어 권리옹호관제도가 등장하였다. 권리 옹호관은 2008년 개정된 프랑스 공화국 헌법상 신설된 제도이다(이준서, 2009). 2011년 프랑스 65세 이상의 노인은 인구의 16.9%, 80세 이상은 5.5%를 차지한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증가, 노인 생존율 증가 및 건강복지 향상에 따른 일상생활 의존도가 높은 노인의 증가에 따라 프랑스의 노인 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의 노인복지 정책은 2003년 여름의 폭서(酷暑)로 인하여 발생한 15,000여명의 노인사망으로 그转机(轉機)를 맞게 된다. 결과적으로 노인에 대한 지속적인 의료관찰을 제공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가 사회복지제도에서 정책 우선순위에 놓이게 된 것이다(강홍진, 2012).

프랑스는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성격의 법이 제정된 유형의 국가는 아니다. 오히려 개별법의 형태로 각 영역의 노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성격이 강하다. 프랑스의 일반 사회복지 제도를 규정하는 사회보장법전은 사회복지제도를 4가지 분야로 구분하는데, 건강(질병, 임신, 출산, 장애, 사망), 산재 및 직업병, 노환 및 퇴직, 가족(장애 및 주택 등)분야로 분리하여 규정한다. 프랑스에는 노인인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노인차별영역에서도 단행법은 없으며, 일반법인 형법과 노동법 및 평등과 차별철폐에 관한 고위관청(HALDE) 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을 뿐이다(강홍진, 2012).

프랑스에는 일반적인 인권보호에 전념하고 있는 국가인권자문위원회와 개정헌법에 신설된 권리옹호관 제도가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랑스 노인복지 제도에서의 시사점은 예산집행의 투명성, 효율성 및 균일성을 보장하는 단일 기금의 설립과 기업과의 합의를 통한 재원 마련 등이다. 또한 복지를 필요로 하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구분된 요양시설 운영시스템도 간과할 수 없는 제도이다

(이지희, 2012). 프랑스 노인복지 제도의 교훈은 통일된 법 규정, 단일 예산 집행기금, 다양한 요양시설 제공, 엄격한 기준에 기초한 지원 대상 노인선정, 노인의 필요를 충족하는 다양한 복지 지원내용 및 지원 인원의 전문화 등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선진 노인복지가 제도화된 국가로의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강홍진, 2012).

독일

독일은 전통적으로 노인인권이나 사회복지 관련 사업들이 기독교 이념에 입각하여 종교단체에서 담당하였다. 20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러한 전통은 지속되어 왔지만,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국민들의 복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민간단체 단독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욕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독일 사회서비스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구심점 역할, 민간사회복지사업단의 공존, 및 보충성의 3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박수지, 2010). 독일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법(Sozialgesetz)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비영리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그 책임을 다할 것을 명시하면서 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구심점 역할’로 여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독일의 인권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먼저 일반적 차별금지법인 ‘일반적 평등대우법(Allgemeines Gleichbehandlungsgesetz: AGG)’이 제정되어 있다. 독일의 일반적 평등대우법(AGG)은 UN헌장, 세계인권선언과 유럽 인권협약 등을 비롯한 국제인권법,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는 유럽연합(EU)법상의 차별금지원칙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이지만, 그와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제3조의 구체화라는 측면이 그 제정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였다. 일반적 평등대우법과 각 분야별 차별금지법제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반적 평등대우법은 차별금지법제의 총칙규정들을 두고 있으면서, 분야별 차별금지법제

노인인권 보장

에서 구체화 되지 못하고 있던 고용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차별금지에 대한 일반법적 요소와 고용분야의 차별금지에 관한 특별법적 요소를 동시에 갖추게 되었다(김지훈, 2011).

일반적 차별금지법은 제7절 제33조로 구성되어 있다. 동법의 입법 목적은 인종, 민족적 출신, 성별, 종교·세계관, 장애, 연령 또는 성적 정체성을 사유로 하는 차별을 예방하고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1년도의 양성평등에 관한 법제의 입법목적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 실현 및 동법 제3조의 적용영역에 있어서 성별을 이유로 한 현존하는 차별의 제거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예방에 있다. 여성은 현존하는 차별을 축소시켜 나가기 위해 이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받는다. 여성과 남성의 가정과 직업 활동의 조화를 개선하는 것도 이 법률의 목적이다. 또 2002년도의 장애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의 입법목적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장애인의 사회 생활에 있어서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장애인)의 특별한 필요가 고려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역시 2004년도의 외국인 차별금지에 관한 법제, 즉 이주법(移住法)의 입법목적은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외국인의 유입을 조정하고 제한하는데 있다. 이 법률은 독일연방공화국의 수용능력 및 통합능력과 경제적·노동시장 정책적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이민을 가능하게 하고 형성하게 한다.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인도적 의무의 이행에 기여한다. 특이한 것은 독일에서는 차별금지 문제를 전담하는 각각의 특별기구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 평등대우법은 차별금지담당국에서, 연방양성평등실현법은 평등실현담당관을, 장애인평등실현법은 장애인권익담당관을, 이주법은 이민·난민 통합담당관을 두고 있다. 노인에 관한 차별금지법제는 없는 실정이다(김지훈, 2011).

독일의 노인복지관련 법률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기본법은 없다. 그러나 독일의 노인복지 정책은 기존의 사회법의 범주를 넘어 국가의 전 영역에 걸쳐 인식되는 중에 각 분야별(건축, 부동산, 재정, 보건의료, 각종 계획법제 등) 개별 법률들은 직·간접적으로 노인복지에 관해 구체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독일의 고령사회 대비 법제

는 크게 소득보장(공적연금, 기업연금, 개인저축 및 보험 등), 고용(촉진), 간병보험 및 기타 고령자 관련 사회보장 법제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보장된 복지국가 원리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국가의 의무로 나타난다. 사회법은 최저생활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구체화된 급여를 실제로 요구할 수 있는 자에 관한 요건을 실정법으로 규정하고 있다(이지희, 2012). 독일의 노인복지법제는 아직까지 완전한 모습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세계 최초로 “사회보험”을 도입하였고 또 세계 최초로 “사회복지 5대 보험” 체계를 정착시켰듯이 사회복지의 수요를 사회적 기본권으로 해석하는 독일의 노인복지 법제를 포함한 사회복지법률 체계망은 그 출발부터 다른 나라의 사회복지법률 체계와 차원이 다르다고 있다.

영국

영국에서는 1601년 엘리자베스 빈민법(Poor Law) 이후 20세기 이전까지 많은 사회복지관련 정책이 도입되었으나, 노인만을 위한 최초의 사회복지 정책은 1908년에 도입된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s Act)이라고 할 수 있다. 이후 1995년 연금법(Pensions Act)의 개정과 2005년 시작된 연금법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인복지관련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영국 노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은 노인들도 다른 일반인들과 같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어 건강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여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인권)를 누리도록 하는데 있다. 전체적으로 영국의 노인복지 정책은 노인의 욕구 및 문제를 해결하는 단순 노인복지 정책이 아닌, 노인의 기본적인 인권과 관련된 노인의 욕구 충족을 위한 국가의 최소기준(National Minimum Standards)을 구축하여 노인복지의 골격을 만들어 왔다는 점이다(윤석진, 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영국은 노인복지 제도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단일의 노인복지법이 존재하지 않고, 노인복지에 관한 각종 급여와 서비스들이 다수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에 산재해 있어, 노인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을 추출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영국에는 노인 인권관련 법률은 없는

노인인권 보장

실정이지만,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은 다수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2006년 차별금지에 관한 일반법인 평등법(Equality Act), 1970년 분야별 개별법인 평등임금법(Equal Pay Act), 1975년 성차별금지법(Sex Discrimination Act), 1976년 인종관계법(Race Relations Act), 1995년 장애인차별금지법(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1999년 장애인권익위원회법(Disability Rights Commission Act), 2003년 고용평등(종교 또는 신앙) 규정, 2003년 고용평등(성적지향) 규정, 2004년 젠더 승인법, 2006년 고용평등(연령) 규정, 2006년 일과 가족법(Work and Family Act) 등이 있었는데, 차별금지 일반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는 평등법(Equality Act)이 2010년에 제정되면서 대부분의 기존의 법률들은 폐지되었다. 2010년 평등법은 기존의 차별금지 법령들을 단순화함과 동시에 개인의 권리와 모두를 위한 기회의 평등을 강화하고, 사회 전 분야의 불평등 및 차별문제의 획기적 개선 및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의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강홍진, 2012; 법무부, 200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영국의 사회보장 관리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지방정부의 역할이다. 그 뿐만 아니라 영국은 독립적인 기구설립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인증·평가하는 책임을 담당하게 하면서 국민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선택하는 서비스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제공되는지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고 있다. 1990년 국가건강서비스 및 지역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제도화된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은 지역사회 보호에 있어 중심적인 전략적 기관이자 다양한 공공·민간자원을 조율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로써 국가중심 서비스 공급 구조는 다양한 민간, 영리, 비공식 부분이 참여하는 분담구조로 변화되었으며, 그 변화의 핵심은 ‘공급자-구매자 분리(purchaser-provider split)’이었다. 이를 통해 다양한 공급자가 경쟁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급 계약을 수주하는 형태로 변형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에는 단순히 국가영역의 축소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서비스 공급 구조에 시장의 경쟁원리를 도입시킴으로써 국가독점 구조보다 공급자의 이해가 개입되는 것을 약화시키고, 소비자의 이해가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서비스 공급자간의 경쟁을 통하여 이용

김재곤

자의 선택을 증진시키고, 비용 효과성을 증대시키며, 서비스의 개선을 촉진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전제되어 있었다(김보영, 2011). 영국의 노인을 위한 사회서비스는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자유경쟁에 의한 민간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서비스 질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형태로 서비스 개혁방향이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결론 및 제언

이상으로 국제기구에서 발표한 노인인권 관련 각종 선언문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어서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주요국의 인권 법제 및 노인복지 법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국의 제도를 하나의 분석틀에 의거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비교이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인 인권법이라는 단행법이 없는 실정이어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웠다. 또 노인인권법과 가장 가까운 법으로는 차별금지법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천차만별이어서 하나의 틀을 만들어 비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다. 역시 노인인권법 및 노인인권 관련 법제가 제정된 국가는 아직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련 제도 법령들의 일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일본의 인권옹호법안, 영국의 평등법 등 각국의 독특한 제도가 주는 새로운 정책적인 시사점은 우리에게 암시하는 바가 작지 않았다. 이러한 국제 선언문 및 각국의 정책 및 입법 자료를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노인복지 정책 및 노인인권 정책의 기본 틀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인권 목록을 작성하는 후속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강홍진 (2012). 프랑스의 사회복지 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발간 *외국법제정보* (2012년 8월, pp. 14-25).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발간위원회 (2004). *인권백서 제1집* (정부문서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14-12).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 보장

- 김보영 (2011). 1980-90년대 영국 보수당 정부 사회서비스 개혁에 대한 재조명: 정치사상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 167-197.
- 김지훈 (2011). *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독일 편*. 세종특별자치시: 한국법제연구원.
- 모선희 등(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 (2004).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NAP 수립을 위한 노인권 기초현황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청구기호 인권위 04-83).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박구용 (2012). 인권과 복지의 경계와 상호 제약적 해명. *동서철학연구*, 64, 59-87.
- 박수지 (2010). 독일의 사회복지 고용수준 및 제도요인 분석. *보건복지 분야 고용현황 및 창출전략: 선진국의 사회복지 고용수준 및 제도요인 분석*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pp. 117-152).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법무부 (2008). *각국의 차별 금지법* [제1권 (독일, EU, 캐나다), 제2권 (미국, 프랑스), 제3권 (영국), 2008년 10월 발행]. 경기도 과천: 법무부.
- 보건복지부 (2000). *고령화 관련 국제행동계획과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2000년 1월 발행, 행정간행물등록번호: 6500-65200-67-200015). 서울: 보건복지부.
- 안진 (2007). 노인인권의 발달과 현황에 관한 소고. *인권법평론*, 1, 109-134.
- 양철호 · 김경호 · 오세근 (2010). *노인인권조례현황과 개선방안*. 2010년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사무소 주최 ‘인권관점에서 본 분야별 조례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보고 및 토론회.
- 오병선 · 박종보 · 김비환 · 홍성필 · 박경서 (2001). *인권의 해설*. (정부문서 발간등록번호: 11-1620000-000338-01).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윤석진 (2011). *차별의 합리성 판단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영국 편* (현안분석 2011-16-2). 한국법제연구원.
- 이서영 (2009). 일본의 권리옹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4, 303-326.

- 이석준 (2001). *고령화 사회의 노인인권보장에 관한 연구: 국제적 보장방안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호 (2006). 근대적 인권 이념의 기초와 한계. *정신문화연구*, 29 (3), 195-223.
- 이준서 (2009). *일본 인권옹호법안의 주요내용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 발간 외국법제정보 (2009년 10월, pp. 4-15).
- 이지희 (2012). *독일의 노인복지 관련법제: 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한국법제연구원 발간 외국법제정보 (2012년 3월, pp. 71-81).
- 이혜경 (2009).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제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세철 · 김정민 (2010). 노인의 권리옹호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 *일어일문학연구*, 48, 413-428.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2012. 07. 20. 발행).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홍일선 (2012). 고령사회를 대비한 헌법적 논의: 국가의 노인보호의무와 노인의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9 (2), 139-160.
- 大道英隆 (2012). 일본의 고령화 사회의 현황과 고령자의 고용문제. *비교노동법논총*, 25, 247-271.
- 日本内閣部 (2014). *平成26年版高齢社会白書*.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index-w.html>.

Cross-Cultural Viewpoints on Human Rights of the Older
People: A Literature Review

Jae Gon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wangju Women' s University
Gwangju, Korea 506-713

When any policy that deals with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older people would be legislated, it should be systematic and/or comprehensive. At the same time, it should focus on the human rights. In this article, most of policies and legislation relevant to the human rights for the older people in the five major countries (USA, Japan, France, German, & England) were compared. The basic frameworks of the policies and legislation were discussed in the context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for the older people.

(논문접수일: 2014년 9월 30일)

(수정논문접수일: 2014년 11월 3일)

(논문게재승인일: 2014년 11월 20일)